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위임 또는 변경 등〉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5호)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6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1호)	1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5호)	1
3.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6호)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1호)	1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5호)	2
3.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6호)	3
III . 검토의견	5
1. 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위임 또는 변경	5
2.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16

I. 제안경위

1.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1호)

가.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2.

다. 회 부 일 : 2025. 10. 23.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5호)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8.

다. 회 부 일 : 2025. 10. 29.

3.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6호)

가.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2.

다. 회 부 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61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

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5호)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식량·원예·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3.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46호)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정부 기조로 확립되고, 이에 기반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로써 서울특별시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특화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4대 국립과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을 23개 보유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둌으로써 농생명 수도의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를 충실히 구현시키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원 중 상임조합장에게만 연임제한을 두고,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음.

이처럼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기 규제 미비는 무제한 재임을 방관하는 원인으로 나타남. 작년 기준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은 108명에 달하고 심지어는 10선·11선 사례까지 확인됨. 비

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지역농협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비상임조합장과 이사·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농협 임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위임 또는 변경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정희용의원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사무소 등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윤준병·이성윤의원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정희용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성윤의원안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u>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u>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u>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u> ----- ----- ----- ----- ----- -.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u>		

현	행	정희용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성윤의원안
		<u>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가. 국회 심사 경과

21대 국회에서 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됨.

22대 국회에서는 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내용으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5.4.23)되어 있음.

【 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 관련 개정안 현황 】

구분	대표발의	제안일	내용
21대 국회	김승남의원	'22.8.22.	■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지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정희용의원	'22.11.15.	
	윤준병의원	'22.12.22.	■ 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
	신정훈의원	'23.1.12.	■ 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서 두도록 함
22대 국회	문금주의원	'25.1.23.	■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지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조경태의원	'25.2.7.	

나. 검토의견

(1) 중앙회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현황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이하 ‘주사무소’라 함)는 법인의 본부가 되는 곳의 사무소로 사무소가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가 주사무소가 되며, 지사무소는 본점에 의해 지휘를 받는 사무소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는 아님¹⁾.

현재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의 주사무소는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음.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1957년 이 법 제정·시행 시(1957.3.1.)에 서울특별시로 규정²⁾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사무소의 설치를 중앙회 정관에, 정관³⁾은 중앙회 내부규정인 직제규정⁴⁾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중앙회의 지사무소는 총 203개로 지역본부, 검사국, 시

-
- 1) 중앙회 내부규정인 「직제규정」상 지사무소는 중앙본부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함(§3Ⅱ)
 - 2) **농업협동조합법[시행 1957.3.1.] [법률 제436호, 1957.2.14., 제정]** 제125조(구역과 지부)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4) 「**직제규정**」 제4조(조직의 편제) ① 본회의 업무운영 조직으로 중앙본부·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를 둔다.
 - ② 중앙본부에는 교육지원부문 및 상호금융부문을 둔다.
 - ③ 제1항의 사무소 외에 교육원·해외사무소 및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본회에 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첨 2와 같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는 변경된 지명으로 한다.

군지부, 교육원·연수원, 해외사무소, 기타 지사무소로 구분됨.

한편, 중앙회와는 별도의 법인이나 조합과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역할 분담⁵⁾을 통해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도 각각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2) 주사무소 소재지의 정관 위임 또는 변경에 관한 검토

정희용의원안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회가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윤준병·이성윤의원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 3건의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정희용의원안	윤준병·이성윤의원안
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정관에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사항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	-	

먼저, 정희용의원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가 지역 간 불균형

5)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자금지원권익증진, 경제지주는 경제사업조성지도, 금융지주는 경제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함.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윤준병·이성윤의원안은 중앙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점으로 농생명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희용의원안과 관련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탄력적 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법률에 규정⁶⁾되어야 할 만큼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중앙회의 존립 목적과 설립 형식에서의 자주적 성격⁷⁾에 비추어

6)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법률-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등으로 이어지는 법령 간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의 중요한 사항은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정의 중요한 사항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급부행정과 같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음(법령입안심사기준(2024년) 제1편,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p. 8, 법제처).

7) 중앙회는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임원의 선·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 결산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구성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농협중앙회와 성격이 유사한 舊축협중앙회에 대하여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축협중앙회를 공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그 존립목적 및 설립형식에서의 자주적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0.6.1. 99헌마553)한 바 있음.

볼 때 정관을 통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임.

참고로, 주사무소(또는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등 특정 지역에 두도록 명시한 경우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모두 존재함.

이 중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⁸⁾는 종전에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경우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종전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서 전북특별자치도⁹⁾에 두도록 명시한 경우임.

【 주사무소 등 소재지 관련 타 입법례 】

구 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 명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u>서울특별시에</u>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54조(목적과 설립)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u>서울특별시에</u>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에</u>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특별시에</u> 둔다.

8)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09년 6월에 지방이전 계획 승인, 2014년 12월에 부산으로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던 조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4년 9월에 발의되어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9)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이전계획이 2011년 8월 2일에 승인됨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3년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구 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 제정 시부터 정관 위임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u>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u>
법률 개정을 통해 정관 위임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50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② 중앙회는 <u>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57조(사무소) 연합회는 <u>서울특별시에</u> 주된 사무소를 둔다.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설립) ④ 중앙회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u> 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전: 제25조(설립) ④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에</u>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주된 사무소를 둔다. ※ 개정 전: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에</u> 둔다.
법률 개정을 통해 명시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u>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u> ※ 개정 전: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자료: 관련 법률 조문 재구성

둘째, 주사무소나 지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중앙회의 국가균형발전에의 기여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부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

를 모색하기 위해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였으며,¹⁰⁾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¹¹⁾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국가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아니나 사회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중앙회 역시 국가균형발전에 일부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중앙회는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앙회의 설립 목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임.

또한, 주사무소 등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조차도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사례는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앙회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2019. 12.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와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구용역을 진행(국토연구원 수행)하였음. 연구용역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

정희용의원안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조문 자체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법률 개정 시 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할 수 있고, 윤준병·이성윤의원안 수용 시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효과를 수반함.

통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 수입 증가, 인구 및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¹²⁾.

중앙회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지역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전 대상 지역은 매년 36억원 내외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됨.

【 중앙회 서울시 납부 지방세 규모 】

(단위: 천원)

세목	세목상세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면허세	출자금등기	1,842,487	970,662	6,380,410	1,075,920	1,170,547
	출자금 외	918	930	763	270	495
자동차세	자동차세	207	130	130	134	136
재산세	건물분	554,541	556,968	579,445	524,184	526,564
	토지분	1,049,853	1,148,405	1,248,310	1,161,981	1,172,794
주민세	사업소분	8,812	9,210	9,676	10,007	9,462
	종업원분	551,028	587,864	623,817	647,828	720,767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137	204,785	1,773,772	685	297
합 계		4,007,983	3,478,954	10,616,323	3,421,009	3,601,062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

12)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 p.2.

또한, 약 930명¹³⁾의 주사무소 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앙회의 신규 채용¹⁴⁾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밖에 이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작용에 따른 상승효과에 따라 그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음.

한편, 이전직원이 1,000명 내외인 공공기관 이전 시 인당 약 2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이전비용이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 지방 이전에 필요한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¹⁵⁾됨.

【 과거 공공기관 이전 비용 】

기관명	이전시기	이전직원	이전지역	이전비용	인당비용
수력원자력	2016년	1,152명	서울→경주	5,804억	5.03억
토지주택공사	2015년	1,694명	경기→경남	4,863억	2.87억
한국전력공사	2014년	1,624명	서울→나주	3,997억	2.46억
한국도로공사	2014년	953명	경기→김천	3,363억	3.53억

※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2016, 국회예산정책처) 이전 비용 상·하위 5개 기관 재구성

또한, 중앙회의 지방이전은 국가 정책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달리 회원조합 간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3)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주사무소 근무 인력은 정규직 729명과 비정규직 201명을 합한 930명임.

14) [중앙회 신규채용 인원(채용일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0명	25명	70명	30명	85명

15)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청사 건축비 또는 임차비, 이주직원 지원비용)의 경우 공공기관 자체 마련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실제 국비 지원 비율은 15%였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2016, 국회예산정책처)

즉, 중앙회의 지방이전 논의가 점화될 경우 지역별로 주사무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별 회원조합과 중앙회 대의원회¹⁶⁾ 현황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회원 및 대의원회 지역별 정수 】

(단위 : 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회원	161	79	64	143	92	144	151	137	23	116	1,110
대의원회	41	24	18	36	27	35	43	36	7	27	294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

따라서 중앙회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편익과 함께 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6)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 선출 및 임원 해임의 건을 제외한 정관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결산승인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음. 중앙회 대의원회의 구성은 회원조합의 1/3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감사에 대해서도 2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u> 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략) ② (생략)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 ----- ----- <u>조합장, 이</u> <u>사 및 감사</u> 는-----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임조합장 등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비상임조합장의 선임 횟수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618개 조합 중 208개소(33.7%)는 초선인 비상임 조합장이고 103개소(16.6%)가 4선 이상인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으며 최다선 조합장은 11선임.

【 비상임조합장 선임 횟수 】

(단위 : 개, %)

구분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10선	11선	합계
조합수	208	187	120	58	27	10	6	1	1	618
구성비	33.7	30.3	19.4	9.4	4.4	1.6	1.0	0.1	0.1	100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비교하여 신용사업 등 일부사업 집행이 제한되지만, 지역조합의 대표권자로서 직원임면권¹⁷⁾ 행사가 가능하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임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상임·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 】

자산총액	조합장	업 무
2,500억원 이상	상임	▪ 모든 사업(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비상임	▪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 - 상임이사가 신용사업 등 수행
2,500억원 미만	상 임	▪ 모든 사업(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비상임	▪ 업무집행 불가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 타 조합의 조합장(이사장) 연임 제한 사례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임조합장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비상임조합장	제한 없음	1차 연임	제한 없음	2차 연임	2차 연임

17)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다만,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심사·의결('25.12.4)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